

연장했으며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했다.

■ 공평과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상의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이 탈루되고 조세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 사용비율만큼 인정하되, 승용차별로 연간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기록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자들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매년 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했다.

47년 만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와 납세방법·절차를 마련하여 2018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종전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되고 있던 것을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했으며, 필요경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은 본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용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R&D 설비, 에너지 절약시설에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을 조정(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했다.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관세에 대해서도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를 신설했다.

■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상속·증여 재산 평가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고,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소득의 80%로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고·저열량 유연탄 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세분화(고·저열량탄 24원·22원 →

고·중·저열량탄 27원·24원·21원)했으며 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18년까지 존치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

■ 개요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 조사했다.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대기업보다 먼저 조사하는 '역추적(윗 물꼬뜨기)' 조사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안 주니 우리도 못 준다'고 1차 협력업체가 버티면 2~3차 업체가 차례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센터를 열었다.

공정위는 2015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업체인 오라클의 '제품 끼워팔기' 의혹, 통신용 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한진그룹, 현대그룹,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으니 이를 풀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판단도 내놴다.

이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고, 불공정한 아이폰 수리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 조사를 확대했다.

2015년 초부터 공정위는 거액의 과징금이 걸린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무리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사건 관련자 진술 내용을 철저히 검증,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건 처리 절차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 '사건처리 3.0' 정책을 내놴다.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을 처

벌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체들의 피해 보상에 중점을 뒀다.

의류, 선박, 자동차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잦은 업종을 집중 조사해 중소기업 1만9천503곳이 밀린 하도급 대금 2천28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2014년 받아낸 미지급 하도급 대금(1천293억원)의 2배 규모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체들의 호소가 쏟아진 의류, 건설, 자동차 등 몇 개 업종을 골라 실태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업체 90곳 가운데 75곳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187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설과 추석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해결한 하도급 대금 규모는 354억원이다.

피해 하청업체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도 41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밖에 하도급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미지급 상태였던 하도급대금 897억원이 해결됐다.

중소기업으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은 중견기업으로 넓혔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면서 대기업 또는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25일부터 전체 중견기업의 75%인 2천900개 업체가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특히 유통, 가맹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집중했다.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12건 적발했고 외식, 문구 등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도 77건 적발해 제재했다.

■ 입찰담합 적발 건수 22% 증가

2015년 한 해 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건수는 83건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입찰 담합 적발 건수가 62건으로 1년 새 21.5% 증가했다.

공정위는 2015년 5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건설업체 22곳은 과징금 1천827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천645억원에 달했다.

7월에는 장기간에 걸쳐 동물 사료가격을 담합한 카길, 하림홀딩스, CJ제일제당 등 11개사에 과징금 773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4년여 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태양, 세인산업, 맥션 등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들은 5년간

출고가격 변동폭을 합의했다가 과징금 309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잡아내기도 했다. 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돌비는 국내 사업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온갖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다가 8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영역을 잠식하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적발도 잇따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TH)의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수자원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공사대금 부당감액,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참고서 강매 등이 제재 대상이 됐다.

■ ‘피부에 닿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

공정위는 2015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대폭 확대했다.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해외 인터넷 쇼핑물 명단을 공개했다.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반품 비용을 떠넘기거나 거짓광고를 일삼은 해외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또 환율·배송료 변동으로 실제 해외 구매대행 가격이 소비자 결제가격보다 낮아졌는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금융, 관혼상제 분야 불공정 약관도 차례차례 고쳐졌다.

2월에는 신용카드사의 귀책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4월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큰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일삼아 온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이어 10월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는 등 부당한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자동차 렌탈업체들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고객들에게 청구해오다가 불공정 약관을 고치게 됐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부당한 광고 시정도 잇따랐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로 광고한 여행사와 홈쇼핑업체,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앞세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유인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 대형사건 잇단 패소로 비판 직면

공정위는 대형 사건의 잇따른 패소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2012년 5천106억원, 2013년 4천184억원, 2014년 7천6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 역시 2013년 26건에서 2014년 54건, 2015년 6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연초부터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공정위는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의 부실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월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1천192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이 별도 담합이나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정유업체 손을 들어줬다.

연말에는 농심이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서 부과받은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공정위가 또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라면값 담합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지면 기업이 낸 과징금만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도 덧붙여줘야 한다. 공정위가 2010년부터 5년간 법원에서 패소해 기업에 지급한 이자(환급 가산금)는 992억원 수준이다.

대법원 패소가 이어지자 공정위 의결 조직인 전원회의는 주요 불공정 혐의 사건에 대해 잇달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앞둔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정이 대표적이다.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시장 1위 업체인 골프존도 가격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예전보다 훨씬 간간하게 사건을 심의한 결과다.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전원회의 의결의 법적 완결성을 법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원회의의 이런 움직임이 자칫하면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사건처리 절차 대폭 개편

찾은 패소로 몸살을 앓던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를 대폭 개편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형 과징금 부과 사건의 패소와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무리한 조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처리 3.0’ 도입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들은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받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고 ‘조사절차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현장 조사 때 지참하는 조사 공문에 기업의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 대상을 특정해 명시하기로 했다.

또 공문에서 밝히지 않은 혐의나 조사 대상 리스트에 없는 자회사는 함부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피조사 업체의 조사 거부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 조사를 맡은 공정위 직원은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직원의 현장 조사가 끝난 이후 담당 과장이 조사받은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애로사항 등을 들어보고, 공정위 직원

들이 위압적 태도로 현장조사를 한 것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새로운 사건처리 지침에는 조사 사건을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만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막기 위해서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독과점 남용 9개월, 담합 13개월)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경제협력

■ 자유무역협정 영토 확대

한국은 2015년에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협정문을 정밀 분석하면서 추가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중 FTA 발효〉

중국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한·중 FTA가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12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 한·중 양국이 12월 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한·중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찬을 교환했다. 김장수 주중국대사(왼쪽)와 중국 측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외교공찬을 교환하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 달러(약 1조5천960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4천33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